

보도시점 2024. 5. 27.(월) 06:00
5. 27.(월) 조간

배포 2024. 5. 24.(금) 16:00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 본격 착수

- 5월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2025년까지 139개 시군 10년간 농촌공간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완료
- * 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경제·일자리, 생활서비스,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5월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정 : 인천·경기·강원권(5.28.) → 충청·제주권(5.30.) → 전라권(6.4.) → 경상권(6.5.)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주민 등의 역할이 중요하나 새롭게 도입되어 아직 생소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 중간지원조직,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이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하며,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연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4년 상반기 농촌공간계획제도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계획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개요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책임자	과 장	김보람 (044-201-1551)
		담당자	사무관	최상만 (044-201-1559)



□ **배경 및 목적**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월)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10년)' '25년까지 수립 필요
- 지자체 담당자 대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지침 등 설명하여 이해도 제고 및 조속한 정책 확산 유도

□ **설명회 개요**

- (방법) 권역별 설명회 추진(인천·경기·강원권, 충청·제주권, 전라권, 경상권)

구분	일시	대상	장소
1차	05.28.(화) 14시	인천·경기·강원권	(경기 여주시) 썬밸리호텔
2차	05.30.(목) 14시	충청·제주권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 4층 대회의실
3차	06.04.(화) 14시	전라권	(전북 전주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4차	06.05.(수) 14시	경상권	(경북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 사이언트리홀

- (참석대상) 시·도 및 시·군 농촌공간계획제도 담당자
- (주최·주관) 농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설명,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세부일정(안)**

시간계획		주요 내용	비고
13:30~14:00	30'	■ 등록	
14:00~14:05	5'	■ 진행순서,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5'	■ 인사말씀	농식품부
14:10~14:30	20'	■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방침 설명	농식품부
14:30~15:10	40'	■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 지침 설명	농식품부
15:10~15:40	30'	■ 질의·응답	참석자
15:40~16:00	20'	■ 종합정리 및 폐회	사회자

□ 개 요

- (성격)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할 농촌공간의 모습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전략계획**
 - * (법적근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수립권자 및 범위)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군·특별자치도청이 관할 구역에 대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 * 농촌공간인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도농복합시 57개, 군 82개)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비
 - ※ 시·도는 시·군 계획의 방향을 조정하고 심의기준을 관리하는 역할 등 수행

□ 주요 내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되, 시·군 여건을 고려하여 항목 간 통합 등 **탄력적으로 수립**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법 제7조제2항) >

■ 지역적 여건 및 특성	■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
■ 기본계획의 방향·목표	■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 인구분석	■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
■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변경	■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관리

- 타 부처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사업계획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군의 전략계획**으로 수립
- 농촌의 다원적 가치, 인구 분산 거주, 저밀도 경제 등 **농촌공간의 특성과 도시와는 다른 차별적인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